

#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정관

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학교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과 유도정신에 입각하여 고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이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성균관대학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**제3조(설치학교)**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학교를 설치·경영한다.

1. 성균관대학교(이하 “학교”라 한다)

**제4조(주소)** 법인은 사무소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-2에 둔다.

**제5조(정관의 변경)**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, 정관이 변경된 경우 관할청에 보고한다.

## 제 2 장 자산과 회계

### 제 1 절 자 산

**제6조(자산의 구분)** ①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② 기본재산은 별지목록의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.

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
**제7조(재산의 관리)**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을 매도·증여·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.

**제8조(경비와 유지방법)**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부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.

### 제 2 절 회 계

**제9조(회계의 구분)** ① 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한다.

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.

③ 학교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구분한다.

④ 제1항의 학교회계는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.

**제10조(예산외의 채무부담)** 법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 포기는 이사회회의 결의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법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세계잉여금의 처리)** 법인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,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
**제12조(회계연도)**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.

### 제 3 절(삭제)

#### 제13조 내지 제21조(삭제)

### 제 3 장 기 관

#### 제 1 절 임 원

**제22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**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이사 7명(이사장 포함)
2. 감사 2명

② 제1항의 이사 중 2명은 개방이사로 한다.

**제22조의2(개방이사의 자격)**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계승·발전시킬 수 있는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, 학교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**제23조(임원의 임기)**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.

1. 이 사 4년
2. 감 사 2년(단,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)

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24조(임원의 선임방법)**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. 취임하는 임원의 성명, 나이, 임기, 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

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
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게 취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.

**제24조의2(개방이사의 선임)**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(재직이사는 임기만료 3개월전)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)에 개방이사 선임대상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.

②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. 다만, 동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이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한다.

**제24조의3(추천위원회)** ① 제2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개방이사를 추천하고자 할 경우 법인, 대학평의회회의 의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를 두며,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회회의에 둔다.

② 추천위원회는 5인으로 하며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
2.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
-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.

**제25조(임원선임의 제한)** 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.

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(친족의 범위)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③ 이사정수의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.

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인사로 선임한다. 다만,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 22조의 2 및 24조 2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
1.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
2.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
3.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6년이 경과한 자

**제26조(이사장의 선출방법등)**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.

② 이사장은 이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.

**제27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**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.

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
③ 이사장을 보좌하고 법인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.

**제28조(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)**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**제29조(감사의 직무)**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게 보고하는 일
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5.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

**제30조(임원의 겸직금지)**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. 그러나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. 다만, 학교의 장이 이사로 선임된 때에는 학교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이사로 재임한다.

② 감사는 이사장·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(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)을 겸할 수 없다.

## 제 2 절 이 사 회

**제31조(이사회회의 구성 및 기능등)** ① 이사회는 이사으로써 구성한다.

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
1. 법인의 예산·결산·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·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
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5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

6.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
  7.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
  8.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-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**제32조(이사회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)**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.

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이사회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**제33조(이사회회의 의결제척사유)**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1.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

**제34조(이사회 소집)**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자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전원이 소집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.

**제34조의 2(이사회 회의록의 공개)**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간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이사회에서 「사립학교법시행령」 제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35조(이사회 소집특례)**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1.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2.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
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## 제 4 장 수 익 사 업

**제36조(수익사업의 종류)**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·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.

1. 조림사업
2. 농산업
3. 제조업
4. 의료업
5. 부동산업
6. 의약품 및 의료용품판매업
7. 장례업
8. 제1호 내지 제7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

**제37조(삭제)**

**제38조(삭제)**

**제39조(삭제)**

## 제 5 장 해 산

**제40조(해산)**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청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.

**제41조(잔여재산의 귀속)**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종료된 후, 법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귀속된다.

**제42조(청산인)**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중에서 선출한다.

## 제 6 장 교 직 원

### 제 1 절 교 원

#### 제 1 관 임 명

**제43조(임용)** ① 법인이 설치·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 다만,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.

③ 학교의 교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,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. 다만,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체결한 계약조건을 변경시킬 수 있다.

##### 1. 근무기간

가. 교수 : 정년까지의 기간. 다만,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신규임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4년 이내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.

나. 부교수 :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4년이내의 기간

다. 조교수 : 4년이내의 기간

##### 2. 급여

정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다.

##### 3. 근무조건

교수시간 및 소속 대학 등에 관한 사항

##### 4. 업적 및 성과

연구실적·논문지도·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

##### 5. 그 밖에 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④ 삭제

⑤ 학교의 부총장, 대학원장, 학장 및 처장 등의 보직은 학교의 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.

⑥ 학교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교원을 임용 또는 보직제청 하고자 할 때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다만, 처장의 보직제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⑦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.

⑧ 학교의 비정년트랙 외국인교육전담교원, 비전임교원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장에게 임용을 위임할 수 있으며, 임용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⑨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하되, 총장은 예외로 한다.

## 제 2 관 신 분 보 장

**제44조(휴직의 사유)**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
1. 신체·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(불임·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)
2. 「병역법」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
3. 천재·지변 또는 전시·사변이나 기타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
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
5.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,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
6. 국제기구, 외국기관, 국내외의 대학·연구기관, 국가기관, 재외교육기관(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)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
7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
- 7의2.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(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)을 입양(入養)하는 경우
8.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
9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
10.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
11.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·연구 등을 하게 된 때
12. 기타 임용권자가 인정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때

**제45조(휴직의 기간)**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.

1. 제44조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2. 제44조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.
3. 제44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.
4. 제44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5. 제44조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.
6. 제44조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.
- 6의2. 제44조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.
7. 제44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8. 제44조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9. 제44조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다만,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 근무, 해외 유학·연구 또는 연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10. 제44조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.
11. 제44조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.

**제46조(휴직교원의 신분)**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.

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, 임용권자는

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.

③ 제44조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.

**제47조(휴직교원의 처우)** ① 제44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. 다만, 결핵성 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중 봉급의 8 할을 지급한다.

② 제44조제2호 내지 제4호와 제6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4조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「사립학교법 시행령」 제24조의6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.

**제48조(직위해제 및 해임)**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
2.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
3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)
4. 금품비위,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·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가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. 다만,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에는 그 6월이 경과한 이후의 기간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.

④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대기를 명한다.

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⑥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.

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.

**제49조(보수)**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50조(의사에 반한 휴직·면직등의 금지)** ① 교원은 형의 선고·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의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학부 또는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
**제50조의2(명예퇴직수당)** ① 학교의 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·지급액·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

**제51조(교원인사위원회 설치)** 학교의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52조(인사위원회의 기능)**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의 장이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를 임용제정하고자 할 때의 임용제정 동의에 관한 사항
  2. 학교의 장이 부총장, 대학원장 및 학장을 보직 제정하고자 할 때에 그 보직 제정동의에 관한 사항
  3. 학교의 장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협력병원에 전임교원의 겸직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 그 겸직 허가의 동의에 관한 사항
  4.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기타 학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
- ② 인사위원회가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정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(前)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
2. 교수·연구·봉사·산학협력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3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

**제53조(인사위원회의 구성)** ① 인사위원회는 부총장, 대학원장, 기획조정처장, 교무처장 및 각 대학의 학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54조(인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직무)**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

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5조(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)** ① 인사위원회의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6조(회의록 작성)**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·날인한다.

**제57조(인사위원회 간사등)**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학교의 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.

**제58조(운영세칙)**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##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

**제59조(징계의 사유 및 종류)**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,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

1.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
2.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
3.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

② 징계는 파면·해임·정직·감봉·견책으로 한다.

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.

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,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
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누우치게 한다.

**제59조의2(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)**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·경찰,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.

1. 제59조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여부

2.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79조에 따른 파면·해임·강등·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(이하 "중징계"라 한다)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0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③ 제60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.

④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·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

1.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

2. 제60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

3. 감사원·검찰·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

4.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

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60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·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.

② 교원징계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「사립학교법」 제62조와 제62조의2의 기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법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**제61조(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)**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

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.

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2조(징계의결의 기한)**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(性)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]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.

②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건에 대한 징계 절차의 진행이 「사립학교법」 제66조의3에 따라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은 제1항의 징계의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.

**제63조(제척사유)**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.

**제63조의2(위원의 기피 등)**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.

**제63조의3(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)**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.

**제64조(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)**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,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. 다만,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.

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**제65조(징계의결)**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사유를 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③ 임용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④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**제66조(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등)**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, 근무성적, 공적, 개전의 정, 징계요구의 내용,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.

**제66조의2(징계사유의 시효)**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. 다만,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,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
2. 공금을 횡령·유용한 경우
3. 「교육공무원법」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

**제67조(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등)**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법인의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.

**제68조(운영세칙)**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# 제 3 절 재심위원회

**제69조 내지 제82조 (삭제)**

### 제 4 절 사 무 직 원

**제83조(자격)**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직원(기능직 및 고용원등을 포함한다. 이하 “일반직원”이라 한다)으로 임용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5.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6의2. 일반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법인과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8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)
 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
9. 성인에 대한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·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. 다만,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·면허증·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.
-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.

**제84조(임용)** ① 일반직원의 신규채용·승진임용·전직·전보·겸임·파견·강임·휴직·직위해제·정직·복직·해임·면직 및 파면(이하 “임용”이라 한다)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·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·방법·절차등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,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.

**제85조(복무)**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칙을 준용하되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86조(보수)**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무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87조(신분보장)**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.

**제88조(징계 및 재심청구)**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,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.

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재심위원회를 두되,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## 제 7 장 직 제

### 제 1 절 법 인

**제89조(법인사무조직등)** ①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과 건설본부를 둔다.

② 법인사무국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.

- ③ 법인의 감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실을 둘 수 있다.
- ④ 제1항,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- ⑤ 법인사무국 운영과 관련해 따로 규정으로 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- ⑥ 삭제

## 제 2 절 학 교

**제90조(총장등)** ① 학교에 총장을 둔다.

- ② 총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.
- ③ 학교에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, 자연과학캠퍼스부총장, 의무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교수로 겸보한다.
-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고, 해당분야를 대표·관리 및 조정하고, 부속기관·부설연구기관 및 부설교육기관의 운영을 총괄한다.
- ⑤ 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인문사회과학캠퍼스부총장이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91조(학장·대학원장등)** ① 학교의 각 대학에 학장을, 일반대학원·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는 원장을 두며,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.

- ② 학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의 행정과 학사과정 및 석·박사학위과정 교육과 전문대학원·특수대학원·부설연구기관·부속기관 운영을 통할하고,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.
- ③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학장을 보좌하는 부학장을 둘 수 있으며, 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한다.
- ④ 대학원장은 대학원을 대표하며, 석사학위·박사학위 및 명예박사학위의 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, 일반대학원장, 전문대학원장 및 특수대학원장은 당해 대학원을 대표한다.

**제92조(하부조직)** ① 학교에 기획조정처, 교무처, 학생처, 입학처, 총무처, 대외협력처, 국제처, 정보통신처 및 자산관리처를 둔다.

- ② 제1항의 각 처에는 처장을 두며,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다. 처장과 부처장은 교수·부교수·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.
- ③ 각 처에 팀 또는 센터를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부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하고, 센터장은 교수·부교수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-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93조(캠퍼스, 대학 등의 하부조직)** ① 학교에 캠퍼스별로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부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- ② 각 대학에 행정실을 두며, 행정실장은 부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94조(부속기관)** ① 학교에는 필요한 부속기관을 둘 수 있다.

- ② 부속기관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기관의 장은 부교수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, 참여 또는 부참여로 보한다.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속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그 자격을 달리할 수 있다.
- ④ 부속기관의 장은 총장, 부총장 또는 학장의 명을 받아 기관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⑤ 부속기관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원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95조(학술정보관)** ① 학교에 부속기관으로 학술정보관을 두며, 학술정보관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보한다.

다.

② (삭제)

③ 학술정보관에 팀을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부참사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**제95조2(산학협력단)** ① 학교에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둔다.

② 산학협력단장은 교수·부교수 또는 참여·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사항 및 분장업무는 산학협력단 정관으로 정한다.

**제95조3(부속병원)** ① 학교 산하에 의료·보건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과대학 부속병원을 두고, 그 병원에 원장을 두며,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한다.

1. 의과대학 삼성창원병원

② 원장은 의무부총장의 지휘·감독 하에 부속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③ 부속병원에 진료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, 진료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, 행정부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여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.

④ 부속병원에 진료 각과와 진료지원 업무의 수행을 위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, 각 부서의 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부참사 이상의 직원으로, 진료 각과의 장은 교원 및 전문의로 보한다.

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95조4(협력병원)** 학교의 장이 허가하는 경우,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협력병원에 본교 교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으며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**제96조(정원)** 법인 및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으며, 부속병원의 일반직원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

## 제 8 장 대학평의위원회

**제97조(대학평의위원회의 설치)** 대학에는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위원회(이하 “평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**제98조(평의위원회 구성)** ① 평의위원회는 교원·직원 및 학생을 대표 할 수 있는 자, 그리고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하는 12명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 5명

2. 직원 2명

3. 조교 1명

4. 학생 2명

5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2명

② 평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99조(평의원의 위촉)** 평의원의 위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교수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
2.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직원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
3.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및 자연과학 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
4.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및 자연과학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.
5.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**제100조(평의원회 의장 등)**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.

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,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.

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, 회의를 주재하고,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, 의장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.

**제101조(평의원의 임기)**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인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② 보선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**제102조(평의원회의 기능)**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 3호 내지 제 5호의 경우 자문에 한한다.

1. 대학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2.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3.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
4.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5. 대학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6.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7.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**제103조(운영규정)** 평의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 제 9 장 보 칙

**제104조(공고)**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중앙일보신문에 공고한다.

**제105조(시행세칙)**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**제106조(설립당초의 임원)**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.

| 직 위 | 성 명   | 생년월일       | 임기 | 주 소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이 사 | 金 昌 淑 | 1879.7.10  | 4년 |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87   |
| "   | 趙 東 植 | 1882.7.8   | 4년 | 서울 성북구 안암동 231     |
| "   | 俞 億 兼 | 1886.3.23  | 4년 | 서울 종로구 가회동 1의 2    |
| "   | 李 能 雨 | 1920.2.4   | 4년 | 서울 종로구 청운동 52      |
| "   | 李 明 世 | 1894.11.30 | 4년 |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  |
| "   | 崔 承 萬 | 1897.11.6  | 4년 | 서울 종로구 사직동 32의 17  |
| "   | 徐 光 高 | 1898.9.16  | 4년 | 서울 종로구 적선동 88의 1   |
| 감 사 | 尹 世 九 | 1897.10.21 | 2년 | 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 53   |
| "   | 崔 益   | 1886.7.11  | 2년 | 서울 동대문구 안암동 175-42 |

## 부 칙

① 이 정관은 1975년 10월 29일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 시행함.

②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본 대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1976년 2월말일부로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면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77년 6월 20일자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정 시행함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1977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자중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이후 6개월이내에 당연 퇴직된다. (결격사유 해당자)

③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되어 사무조직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사무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.

④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, 2, 3의 각 직급에 임용된 자는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1981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교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이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이 학교의 교원의 임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③ (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 청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④ (학교의 장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학교의 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규정된 임기에 의한다.

⑤ (학교의 보직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이 학교의 부총장 등의 보직은 이 정관에 의하여 이 학교의 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.

⑥ (인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은 이 정관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.

⑦ (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,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8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83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84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84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85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85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8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1985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87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88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2년 5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2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6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199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이사 정수에 의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로 인하여 이 정관에 의한 이사 정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이사가 사임 또는 해임될 때까지 그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한다.

③ (임용기간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직중인 부교수의 임용기간은 그 임용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이 정관은 1998년 10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학장 존치에 대한 경과조치)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, 법과대학·사범대학 및 의과대학은 당해 대학이 전문대학원으로 개편되는 때까지 학부장에 갈음하여 학장을 둔다.

부 칙

이 정관은 1999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2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3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4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5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06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임원선임 기간의 예외)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결원 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6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08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1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정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) 2020년 2월 21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정직처분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5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정관 규정에 따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정관은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